

서울특별시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 혜 련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복지와 보건의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영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서울시 아동·청소년 중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본 조례안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주요내용으로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·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. 또한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으로 한정하였고 지원범위,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서울시 아동·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복지 서울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